

JAN 2023. Issue 170

ZOOM 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Where Is Grace Chang?

03 ... 증꺾마(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The New Customs Study

06 ... 세관은 해외직구물품을 구매대행으로 볼 것인가, 수입대행으로 볼 것인가.

최신 관세 판례 분석

10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제출한 쟁점원산지증명서가 한중FTA 적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114)

논리로 푸는 HS 사례

13 ... 부탄의 품목분류와 합목적성을 결여한 과세에 대한 결정

Global Customs Insight

17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이전가격에 대한 OECD 지침 소개
- 4.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FTA 및 수출입 실무 안내

20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신청기간 연장 등

관세무역개정 내용과 의견

24 ...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중꺼마(중요한 것은 꺼이지 않는 마음)*

장 승 희
대표 관세사

“
어디로 가고 싶으신지요? 이 한해동안
꺼이지 않는 마음으로 지속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를
어디에 두셨는지요?
”



지난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였습니다. FIFA 랭킹 8위인 포르투갈을 랭킹 28위의 한국 축구 팀이 이김으로 얻어낸 결과였습니다. 시합에의 출전은 겨루는 상대팀을 이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겨야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선수를 비롯한 감독과 코치 모두들 성실하게 준비를 합니다. 승리라는 골을 향해 치열하게 한걸음 한걸음 나아갑니다.

2022년 12월 3일.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들과 응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표현한 문구는 '중요한 것은 꺼이지 않는 마음' 입니다. 승리라는 목표를 향해 힘든 순간들에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달 The New Customs Study는 '세관은 해외직구물품을 구매대행으로 볼 것인가, 수입대행으로 볼 것인가.' 입니다. 최신 관세 판례 분석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제출한 쟁점원산지증명서가 한중FTA 적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 0114)'이며, 논리로 푸는 HS 사례는 '부탄의 품목분류와 합목적성을 결여한 과세에 대한 결정'입니다. 또한 Global Customs Insight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이전가격에 대한 OECD 지침 소개 - 4.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이며, FTA 수출입 실무 안내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신청 기간 연장 등', 관세무역개정 내용과 의견은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입니다.

‘중꺾마’ 문구는 월드컵 이전에 열린 글로벌 온라인 게임 대회인 ‘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에서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실력이 출중한 한국팀이 1라운드에서 패배하였습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팀의 리더는 “지긴 했지만, 저희끼리만 안 무너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기자는 이 내용을 “로그전 패배 괜찮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멋진 기사로 만들었습니다. 최종 승리를 이루어낸 DRX팀의 리더에게는 승리라는 목표보다 팀원들이 끝까지 협력한다는 목표가 우선이었습니다.

협력하며 나아가는 길 어딘 가에서 승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승리가 삶의 방향과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끝까지 함께 협력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목표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중꺾마’의 정신으로 나아간다면 그 가는 길에 승리나 성공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이번기회에 만나지 못하게 된다 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면 언젠가는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도우며, 신뢰하며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나 이웃이 있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26살에 변호사를 그만두고 37살에 첫 책을 출판한 이민진 작가는 ‘똑똑하지는 않지만 꿈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다’고 자신에 대해 말합니다. 또한 “행복을 좇기 시작하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며, “현재 이 순간을 선물로 생각하는 것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11년간 견습작가로 지냈던 그의 쓰는 용기, 기다리는 용기는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하며 무엇이 중요한 지에 집중하고 버텨내려고 노력하고 있기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쟁에서의 승리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출간한 책이 베스트 셀러가되면 이로 인해 다양한 기회와 문이 열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 질 수 있습니다. 이제 행복이 완성된 것일까요? 목표에 도달한 것일까요? 며칠 혹은 몇달간 계속된 기쁨은 조금씩 사라지고 희미해집니다. 다시 새로운 우승컵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매일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으며 순간 순간 판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삶의 목표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경쟁에서 이김이 목표인지, 동료와 힘을 합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표인지? 나의 행복을 좇아 다니며 살아야 할지,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할지? 무엇이 중요한 지 판단해야 합니다.

2023년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또다시 출발선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귀를 쫑긋합니다. 출발을 알리는 신호가 떨어지고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기 위해 힘껏 발을 내딛었습니다. 한해동안 이루어 갈 목표를 바라보며 달려나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좇는 것이 목표가 아니기를 바

랍니다. **필요한 만큼을 넘어서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 선택하는 순간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365일이라는 짧지 않은 날들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달라'는 앨리스에게 체서 고양이가 말합니다. **"그건 네가 어디로 가고 싶은 지에 달렸지."*****

어디로 가고 싶으신지요? 이 한해동안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지속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를 어디에 두셨는지요?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강윤주, " 2022 대한민국은 중격마 열풍", 한국일보, 2022.12.05.

** 김지수, "김지수의 인터스텔라, 이민진", 조선BIZ, 2022.12.24.

*** 구은서, "토끼굴에 들어가자 모험이 시작됐다, 한국경제, 2023. 1. 28.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Seunghee Chang*



The New Customs Study

세관은 해외직구물품을 구매대행으로 볼 것인가, 수입대행으로 볼 것인가.

- 개념과 관점에 따라 국민안전을 위한 규제의 방향이 달라진다 -

2023년 1월 26일자 한국경제신문의 "120조 초국경 택배시장에서 뒤쳐진 한국"이라는 기사에 따르면, 물류업체들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해서 초국경 택배활성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규제를 고집해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물류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정식통관절차를 거친 제품을 더 비싼 가격에 사는 대신 A/S를 보장받을지 저렴한 가격에 직구하는 대신 A/S를 포기할지는 소비자가 선택할 문제이며, 인천공항 GDC(글로벌 디스트리뷰터센터)를 통해 식품을 관리하면 일반 직구 제품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서 영 진

전무/관세사

wedin8@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기업심사
- 외환 컨설팅
- FTA 자문

글로벌 택배를 하고 있는 물류업체들이 원하는 것은 크게 2가지, 건당 USD150 불미만의 수입물품의 면세확대와 식품안전, 화장품안전과 같은 수입규제의 면제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수입되는 직구물량이 해외로 수출하는 역직구물량보다 10배정도 많은데, 그 이유는 전자상거래물품중 수입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물품의 자가사용인정기준을 정할 당시에 국외여행자의 자가사용인정기준과 동일하게 정함에 따라 다른 나라보다 자가사용인정기준을 느슨하게 한 것에 기인한다.

2021년 아이허브마켓과 같은 곳에서 해외직구로 구매한 건강기능식품이 연간 1천5백만건(8억8천만불), 기타식품이 1천1백만건(4억4천만불), 화장품이 4백만건(1억7천만불)에 달하는 등 연간 약 3천만건이상의 수입안전규제대상물품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개인들에게 해외직구라는 이름으로 공급되고 있다.

이웃 나라들의 수입규제부터 살펴보면,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은 자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은 전자상거래든 오프라인 판매이든 수입식품, 수입화장품, 수입의약품은 수입안전검사를 면제하지 않고, 수입대리인이 안전이 확인된 물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수입안전검사를 받은 물품만 수입해서 전자상거래로 팔든지 일반 판매를 하든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너무 많은 분야에서 개인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자가사용인정기준을 적용, 면제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

한국은 개인의 해외직구 물품이 타인에게 판매할 것이 아니고 자기가 소비할 것이라고 하여 면세와 더불어 수입안전요건을 면제해 주면서 모든 책임은 개인이 부담하라고 하는데, 당장에 건강상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 향후 어떤 안전에 위해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지 알 수 없다.

젊어지는 약, 살빠지는 식품 등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열풍이 한국으로 옮겨와 대부분 가정에서 한두병씩 가지고 있는 건강식품과 의약품들은 이전에는 미국과 한국간의 보따리상에 의해 소량으로 수입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자가사용인

정기준을 활용해 연간 수천만건의 건강보조식품과 의약품이 안전검사없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으므로 이를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개인이 해외에서 인터넷 구매하는 건강보조식품과 의약품에 대해 안전규제를 하지 않지 않는걸까?

여기서 중요한 개념의 차이는 미국, 일본세관에서는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을 대리하는 기업을 수입대행업체라고 하는데 한국세관은 구매대행업체라고 하여 달리 보고 있다는 점이다. 수입대행업체는 수출자를 대신하는 것이고, 구매대행업체는 수입하는 개인 구매자를 대신하는 것인데 이들의 수행업무는 동일하지만 통관당국이 의무부여를 달리 보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수입대행업체가 대행한 물품에 대한 안전성검사와 사후 구매자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출자를 대신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구매대행업체가 개인 구매자를 대신하는 것으로 보아 안전검사와 사후 문제발생시 개인 소비자가 스스로 책임을 지라는 것에 있다. 이렇게 구매대행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설사 국민 건강에 위해가 가는 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해도 개인이 알아서 감내할 수 밖에 없고, 해외 수출자에게까지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책임질 일이 발생해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개인 구매자의 관점에서는 전자상거래 물품이 해외에서 직구되는 것이지만, 세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점에서는 전자상거래물품이나 일반 수입물품이나 동일하게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받도록 하고 예외나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연간 수천건의 문제가 아니라 수천만건이 안전검사없이 통관된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의무를 부여받은 안전규제당국과 통관당국의 의무를 다한다고 보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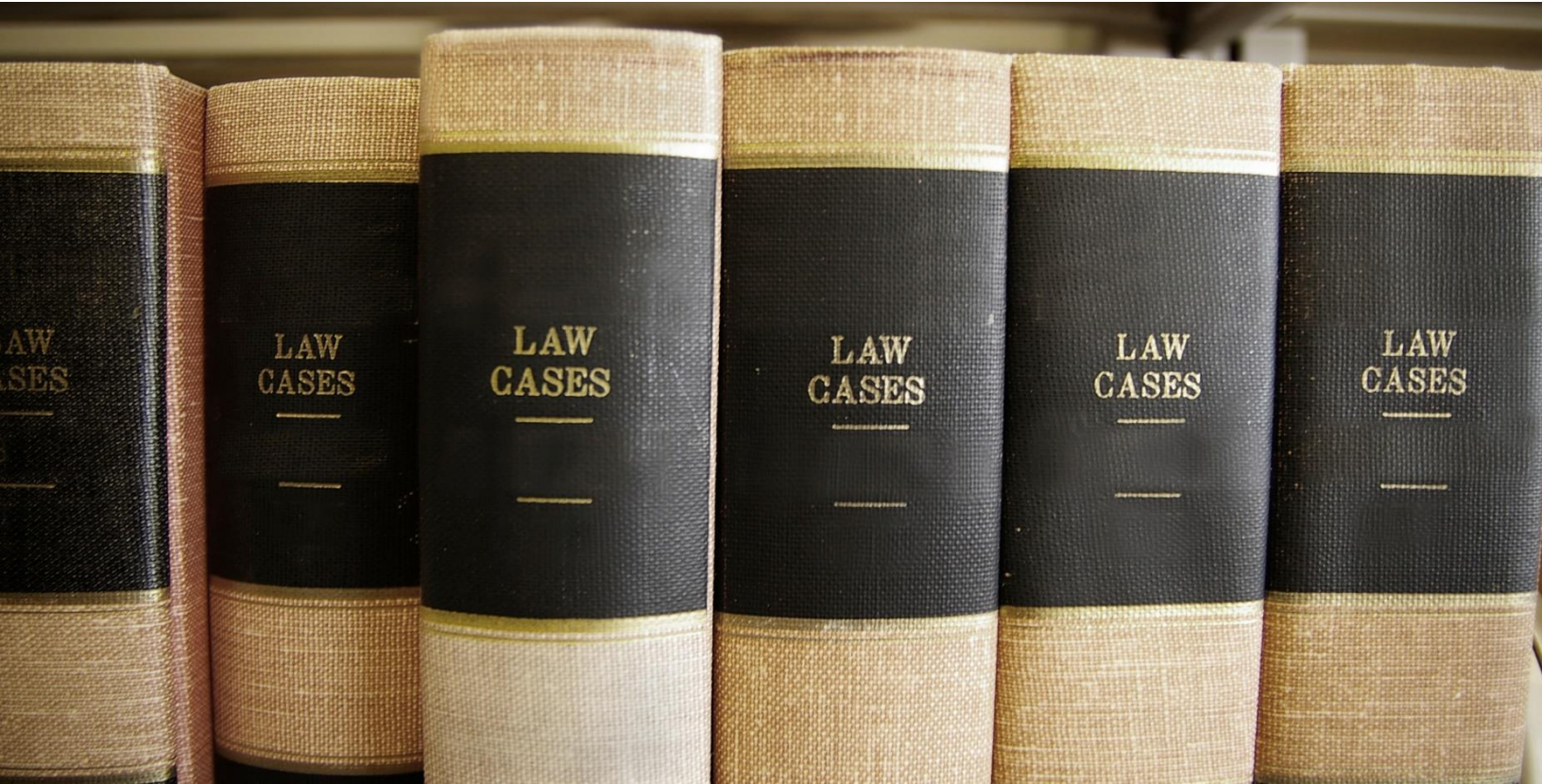
국민이 수입해서 소비하는 물품이 전자상거래에 의하든 일반수입에 의하든 안전이 확인된 것만 수입되어야 하고,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어떤 경우에도 수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쉽게 설명해서 식당에서 먹는 것은 안전해야 하고, 배달해서 먹는 것은 안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닌 것과 같은 이치이다.

수입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화장품의 안전을 개인에게 책임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수입대행회사가 책임을 지든 외국의 수출자가 책임을 지든 거래에 관계해서 이익을 취하는 기업에 그러한 의무를 부여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토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의무가 정부에 있다.

국외여행자가 현지에서 구매한 물품의 자가사용인정기준을 인터넷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전세계로부터 구매해 오는 물품의 자가사용인정기준과 동일한 선상에서 보는 것은 불합리하며, 최초 전자상거래 통관 고시를 제정할 당시의 예상물량이나 상황이 어떠했는지 간에 올해는 새롭게 검토되어야 한다.

전 인구의 30%~40%가 해외직구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수입요건대상물품의 자가사용인정기준을 정했다고 해서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수입식품과 의약품, 화장품의 안전은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의 제도를 잘 살펴서 우리의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최신 관세 판례 분석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제출한 쟁점원산지증명서가 한중FTA 적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114)

1. 사실관계

- 청구인은 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원산지증명서를 갖춘 후 한-중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심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한-중 FTA 적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쟁점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원산지 자율점검을 안내 하였으나, 청구인은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에 가산세 부과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FTA 관세특례법 제35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관세 등 및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습니다.



나 지 원

관세사

jwna@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 통관
- 검역/요건
- 품목분류
- 관세환급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주장

- 처분청이 쟁점물품 수입신고서류가 제출되었을 당시 또는 1년 이내에 관련 서류의 제출 요청이 있었다라면 쟁점수출자로부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 처분청에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의 원산지심사는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져 청구인으로서 쟁점수출자로부터 적법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한을 놓친 것이기 때문에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합니다.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통관단계에서 검사 및 심사를 하였음에도 원산지증명서의 적정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에 적정한 원산지증명서의 보완을 요구했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청구인에게는 부족세액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2) 처분청 의견

- 청구인은 한-중 FTA에 따른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고 협정관세율 적용을 받은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합니다. 또한 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심사는 FTA 관세특례법 등에 따라 적법한 기간 내에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협정관세율 적용 신청 시점에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합니다.

- 청구인이 FTA 관세특례법 등의 기본적인 규정을 확인해 보았다라면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않은 경우 또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만으로는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의 법령에 대한 무지나 착오 또는 쟁점원산지증명서가 특혜 원산지증명서에 해당한다고 오인한 중대한 과실로 인해 부적정하게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심리 및 판단

- 한중FTA와 FTA특례법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때는 수입자는 원산

지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적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신고수리행위와 물품검사가 있었다고 하여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유효하지 아니한 쟁점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점, 세관장이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협정관세 적용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입증책임은 협정관세율 적용신청자인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통관과정에서 처분청의 물품검사 및 서류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 책임이 처분청에 전가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4. 시사점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물품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대상이어야 하며, 원산지가 체약상대국이어야 하고 수입신고당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협정관세 적용 신청당시 원산지 증빙서류의 제출이 필수는 아니지만 세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때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적법한 서류의 구비가 필수적입니다.



논리로 푸는 HS 사례

부탄의 품목분류와 합목적성을 결여한 과세에 대한 결정

1.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01.1월부터 2003.8월까지 HSK 2901.10-1000으로 수출통관한 부탄가스 카트리지(이하 "쟁점 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을 받았다.
- 관세청은 심사정책47130-367호(2003.5.7)를 통하여 HSK 2901.10-1000(환급액: 60원)로 환급받은 쟁점물 품이 HSK 2711.13-000(환급액: 100원)에 분류될 수 있으므로 관세환급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처분청 에 지시하였다. 처분청 역시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이 HSK 2711.13-000에 분류될 수 있음을 통지하였 다
- 이에 청구인은 중앙관세분석소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하였고, 2003.6.4 중앙관세분석소는 청구인 이 수출통관한 것과 같은 세번인 HSK 2901.10-1000에 분류된다고 사전심사 통지하였다.
- 그러나 2003.9.1 중앙관세분석소 품목분류협의회에서 쟁점물품을 HSK 2711.13-000로 변경하여 결정하 였고 청구인에게 사전심사 정정통보를 하였다



홍혜리

관세사

hrhong@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기업심사
- 외환 컨설팅
- FTA 자문

- 처분청은 쟁점물품 품목분류가 2711.13-000로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전 세번인 HSK 2901.10-1000으로 2001.1월부터 2003.8월까지 수출하고 환급한 금액에 대하여 과다환급하였다고 보고 XX원을 추징고지하였다.

- 이 후 관세청장은 쟁점물품 품목분류 변경고시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쟁점사항

(쟁점1) 쟁점물품을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다른 2개 이상의 물질이 결합된 부탄가스로 보아 HSK 2711.13-000(환급액: 100원)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 부탄가스로 보아 HSK 2901.10-1000(환급액: 60원)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쟁점2)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이 소금과세금지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쟁점3) 추징고지가 법적 근거 없이 행하여진 부당한 행정처분인지 여부

3. 쟁점심리

(쟁점1) 품목분류 적정성 여부

쟁점물품은 노르말부탄 약65%와 이소부탄 약 35%로 구성되어 동일한 분자식을 가지고 있으나 탄소사슬의 모양이 달라 물리적·화학적 성질이 다른 구조이성질체에 해당한다. 품목분류를 위해 관세율표의 관련 주 및 해설서 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 :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나) 같은 유기화합물의 2이상의 이성체의 혼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포화 또는 불포화의 비환식 탄화수소에 있어서는 입체이성질체 외의 이성체의 혼합물(제27류)을 제외한다.

- 관세율표 해설서 제2711호 : (IV) 부탄(노르말부탄과 이소부탄의 순도 각 95%미만의 것에 한함) 노르말부탄 또는 이소부탄의 순도가 95%이상인 것은 제 2901호에 분류된다.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에 따르면 입체이성질체가 아닌 구조이성질체에 해당되는 쟁점물품은 제27류에 분류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2711호에 따르면 노르말부탄과 이소부탄의 각 순도가 95%미만인 쟁점물품은 제27류에 분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부탄가스가 ①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인 부탄이거나 ② 포화비환식탄화수소로서 화학적으로 동일한 분자식을 가지고 있으나 차원공간에서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배열 방향만이 서로 다른 입체이성질체인 부탄 또는 ③ 노르말부탄과 이소부탄의 각 순도가 95% 이상인 부탄인 경우에는 제29류에 분류되는 것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제27류에 분류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례에서와 같이 청구인의 쟁점물품은 노르말부탄 약65%와 이소부탄 약 35%로 조성된 구조이성질체에 해당되므로 쟁점물품은 제27류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2 및 쟁점3) 소급과세금지신의성실원칙 위배여부 및 추징고지의 부당처분 여부

- 청구인은 1997.10. 이후 2003.8.까지 6여년의 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HSK 2901.10-1000로 수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2002.10.부터 2003.9.까지 11회에 걸쳐간이정액환급을 받아 왔음이 관련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한편 관세청이 보유한 전산자료를 확인한 결과 같은 기간 동종업체도 동종의 물품을 수출입함에 있어 품목분류를 HSK 2711.13-0000 또는 HSK 2901.10-1000으로 구분없이 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다.

- 또한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에 대해 품목분류 전문기관인 중앙관세분석소도 청구인의 품목분류와 동일하게 HSK 2901.10-1000으로 품목분류하여 회신한 사실이 있다.

-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중소기업인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HSK 2901.10-1000로 분류하여 수출하고, 이를 근거로 간이정액환급을 받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신뢰함에 있어 무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나아가 청구인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HSK 2901.10-1000으로 분류됨을 회신하였다는 것은 이에 기하여 수출통관 및 간이정액환급한 것에 대하여 그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일면이 있는 것이다.

- 또한 2003.9.1.에 이르러 동 품목분류 사전심사통지가 잘못되었다고 통보하고 동년 11.7. 관세청장이 이를 변경고시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같은 영세한 중소기업체가 장기간에 걸쳐 성실 하게 수출통관 및 환급한 사실을 부정하고 소급하여 그 환급금을 추징함은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적용의 합목적성을 결여한 부당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4. 결정 : 신뢰된 품목분류에 따른 환급금 추징처분은 합목적성을 결여한 부당한 처분

(쟁점1) 품목분류 적정성 여부

쟁점물품은 노르말부탄 약65%와 이소부탄 약 35%로 구성된 구조이성질체에 해당되므로 HSK 2711.13-000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2 및 쟁점3) 소급과세금지신의성실원칙 위배여부 및 추징고지의 부당처분 여부

청구인 및 동종업체가 일관되게 수출신고를 행하였다는 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에 따른 결정통지를 신뢰하였고 이러한 신뢰에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소급과세인 환급금 추징고지는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환급금 추징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Global Customs Insight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이전가격에 대한 OECD 지침 소개 - 4.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20년 2월부터 코로나바이러스는 전세계를 강타하여, 우리가 가졌던 상식과 생활방식은 물론 무역 및 관세분야 또한 급격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137개 회원국의 합의된 견해를 수렴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이전가격지침 (2020.12)'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정한 사실관계 및 이슈에 대한 OECD 이전가격 지침의 정상가격원칙(arm's length) 및 적용, BEPS(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에 대해 관련 포괄적 프레임워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원칙적으로 다국적 기업 및 세무당국을 위한 2017년 OECD 이전가격 지침(OECD TPG)은 적용되어야 하며, 1) 비교가능성 분석(comparability analysis), 2) 코로나-19 특정비용의 할당과 손실 (losses and the allocation of COVID-19 specific costs), 3) 정부지원 프로그램 (government assistance programmes), 4)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advance pricing agreements, "APA")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번호에서는 마지막으로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를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차미정

팀장/관세사

mjcha@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 요건
- 통관 법률 자문

일부 납세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상황에서 기존 APA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납세자들은 관련 세무당국에 적시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협력적이고 투명한 접근법 채택이 장려됩니다. 납세자는 관련 세무당국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APA와 그 조건은 APA의 취소 또는 개정으로 이어지는 조건(예: 중요한 가정 위반)이 발생하지 않는 한 존중, 유지 및 유지되어야 합니다. 납세자와 세무당국은 경제 상황의 변화로 인해 기존 APA의 조건을 자동으로 무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APA는 비준수 또는 중요한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을 구성하는 요소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를 명시적으로 설명합니다. 또한 국내법과 절차조항은 납세자와 영향을 받는 세무당국에 결과 또는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기존 APA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때 납세자와 세무당국은 모든 것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가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세무당국과 납세자는 1)APA의 조건 2)실패 처리방법에 대한 관련 세무당국과의 합의 3) 적용 가능한 국내법 또는 절차조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국내법 또는 절차규정은 중요한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결과를 기술하거나,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위반의 영향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와 세무당국은 APA를 계속 적용할지를 합의할 수 있으며, 양자 또는 다자 APA의 경우, 일반적이고 유용한 관행은 일방적인 변경을 부과하기 전에 세무당국이 협의하는 것입니다.

- 1) 개정(Revision)- 개정일 전후에 서로 다른 조건이 적용되지만 납세자와 세무당국은 제안된 기간 전체에 대해 APA의 혜택을 여전히 가지고 있음
- 2) 취소(Cancellation)- APA는 제안된 기간 전체가 아닌 취소일까지만 유효함
- 3) 폐지(Revocation)- 납세자가 APA에 가입한 적이 없는 것처럼 취급됨

중요한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변화가 발생했거나 또는 납세자가 변화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납세자는 세무당국에 고지하여야 하며, APA의 개정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 시간을 더 제공하기 위하여, 조속한 고지는 장려됩니다. APA의 중요한 가정을 위반하는 경우, 납세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수집하여 세무당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증빙서류는 하기의 사항을 포함하나,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1) APA와 관련된 기업과 거래를 포괄하는, 경영진이 추적한 가장 좁은 범위의 납세자 사업 부문에 대한 설명

2)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회계 연도 또는 회계 연도 내에 종료되는 회계 연도의 예상 및 실제 사업 부문 이익

3) 대상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된 당사자 간의 기존 계약 또는 새로운 회사 간 계약에 대한 수정 제안 또는 시행된 내용을 보여주는 사본

4)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회계연도 동안 합의된 이전 가격 결정 방법에 대해 현재의 경제 상황이 끼칠 예상 영향에 대한 설명(운영 및/또는 위험과 책임의 변화를 야기했는지, 정부 조치 또는 업무 중단 보험과 같은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 당사자에게 현재 경제 상황에서의 영향의 완화 야기했는지 포함)

5) 매출원가(COGS)와 판관비(SG&A) 및 기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회계연도에 대한 이자 이외의 비용(APA 적용 대상 거래 포함)의 내역이 포함된 상세한 손익계산서(코로나-19에서 발생하는 예외적인 운영 비용 또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소득 및 해당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이 포함)

6) 제3자 행위에 대한 정보

세무당국이 관여하는 때, 납세자는 적시에 투명하고,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APA 협상 성공에 필수적인 비적대적인 인식과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처: GUIDANCE ON THE TRANSFER PRICING IMPLICATIONS OF THE COVID-19 PANDEMIC © OECD 2020

관세사 차미정



FTA 및 수출입 실무 안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신청 기간 연장 등

2022. 12. 3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의 개정으로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확대되어 안내 드립니다.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기 위하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기간을 종전 2 년에서 5 년으로 연장하고, 종전에는 관세조사의 통지나 환급금액 등에 대한 징수내용 서면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김혜란

팀장/ 관세사
hrkim@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기업심사
- 외환 컨설팅
- FTA 자문

■ 관세 환급신청 기간 연장 (환급특례법 제 14 조 제 1 항 관련)

현행	개정
<input type="checkbox"/> 환급신청 기간 <input type="checkbox"/> 수출신고 수리된 날부터 <u>2년</u>	<input type="checkbox"/> 기간 연장 <input type="checkbox"/> 수출신고 수리된 날부터 <u>5년</u>

관세환급특례법[시행 2023. 1. 1.] [법률 제 19197 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 14 조(환급신청) ① 관세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22. 12. 31.>

1. 「관세법」 제 38 조의 2 에 따른 보정(補正)
2. 「관세법」 제 38 조의 3 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
3. 제 21 조에 따른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액의 징수 또는 자진신고·납부

부 칙

제 2 조(환급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 14 조제 1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환급 신청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종전 「관세법」상 환급청구권은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년임을 감안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기존 2년에서 현행 5년까지 점차적으로 연장하였으나, 관세환급특례법상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으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관세법상 환급청구권과 관세환급특례법상의 환급청구권이 동일하게 5년으로 적용되었고, 국가의 징수권과 국민의 재산권 간의 형평성이 제고되었습니다.

※제 14 조제 1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환급 신청 분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2021. 1. 1. 이후 수출신고가 수리된 건들은 환급신청기한 연장에 대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금지사유 폐지 (환급특례법 제 21 조 제 4 항 관련)

현행	개정
<input type="checkbox"/>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금지 ○ 금지사유 -① 과세전통지한 경우 -② 관세조사를 통지한 경우 -③ 관세범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경우 ○ 자진신고 시 가산금 우대이율(시행령) -(자진신고) 1 일 10 만분의 10 * <예외 신설> -(자진신고 외) 1 일 10 만분의 39	<input type="checkbox"/> 기간 연장 ○ <삭제> ○ ①~③에 해당하는 자진신고의 경우 가산금 우대이율 적용 배제(시행령) -(현행과 같음) * (예외) ①~③에 해당하는 자진신고의 경우 1 일 10 만분의 39 -(현행과 같음) ○ 시행일: 2023 년 4 월 1 일

관세환급특례법[시행 2023. 1. 1.] [법률 제 19197 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 21 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④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 또는 제 7 조제 1 항에 따른 정산통지를 받은 자는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또는 정산통지를 받은 후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이 부족하게 정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그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등을 납부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2023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21 조제 4 항의 개정규정은 2023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 3 조(과다환급금 자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 21 조제 4 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자진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세환급특례법에서는 과다환급이 발생한 경우 가산금 이율을 1 일 0.00039%(연 14.235%)를 적용하되,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가 자진신고를 할 경우 가산금의 이율을 1 일 0.00010%(연 3.65%)을 적용하여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정전 관세환급특례법에서는 세관장이 과다환급금액에 대하여 이미 ① 과세전통지한 경우, ② 관세조사를 통지한 경우, ③ 관세범에 대한 조사 등을 시작한 경우에는 자진신고의 의미가 일부 퇴색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자진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과세전통지나 관세조사를 통지한 경우 등에는 업체가 과다환급을 인정해도 자진신고가 불가능하여 징수결정시까지 시일이 많이 소요되어 과다환급가산금의 부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2023. 4. 1.부터 '관세조사 통지' 직후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게 되어 업체의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으로 관세조사 통지 이후 등의 경우에도 과다환급금 자진신고가 가능하게 되어 이 경우 **과다환급금 징수 시의 일반 가산금 이율인 1 일 10 만분의 39 을 적용하는 규정**을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에 신설될 예정입니다(현재 입안예고 중).

※관세조사통지 이후 자진신고가 가능하지만, 종전 자진신고 이율(1 일 0.00010%)이 아닌 종전 일반 이율(1 일 0.00039%)이 적용됩니다.



관세무역개정 내용과 의견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수정수입세금 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1. 개정 이유

기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원칙적 미발급, 예외적 발급' 에서 '원칙적 발급, 예외적 미발급' 체계로 전환을 통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확대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2. 주요 개정내용

기존에는 세관장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수입자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결정·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납세자가 관세포탈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합니다.



심은영

관세사

eyshim@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기업심사
- 외환 컨설팅
- FTA 자문

3. 개정 전/후 규정 비교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제2항 제2호 및 제3호, 제4항

개정 전	개정 후
<p>2. <u>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u>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p> <p>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p> <p>다.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2. 「관세법」에 따라 <u>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수입하는 자가 해당 재화의 수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u></p> <p>가. 「관세법」 제270조(제271조제2항에 따른 미수범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270조의2 또는 제276조를 위반하여 고발되거나 같은 법 제311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p> <p>나. 「관세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부당한 방법으로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p> <p>다.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면서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p>
[신설]	<p>3. <u>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그 결정·경정 전에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재화의 수입과 관련하여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u></p>
[신설]	<p>④ 세관장은 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여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거나 제3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한 이후에 <u>수입하는 자가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 세관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내용이나 수입하는 자가 수정신고한 내용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u></p>

4. 시행일자

2023년 1월 1일 시행

5. 개정에 대한 의견

개정 전 법률에 따르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자체가 매우 한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착오', '경미한 과실', '귀책사유 없음'과 같이 모호한 개념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과세관청과의 분쟁소지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모호하고 추상적인 발급 요건들을 삭제하고 '원칙적 발급, 예외적 미발급' 방식을 취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현재 관세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하여도 아직 경정 또는 수정신고 전이라면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보다 넓은 범위에서 수정수입계산서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THE BEST CUSTOMS ADVISOR

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